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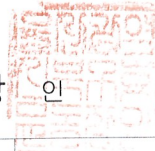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04월 11일

효문동장

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박 *호	박 *호 1966-09-02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2길 (진장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4-11
이 *운	김 *지 1993-05-10	울산광역시 북구 율동2길 (효문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4-11